



# 유럽회의의 108호 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박 현 일\*

## | 국문 요약 |

1949년에 설립된 유럽회의(CoE)는 유럽인권협약(1950)에 근거하여 1981년 개인정보보호협약을 채택(1985.10. 발효)하였다. CoE 108호 협약은 그 회원국의 과반을 점하는 EU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CoE 108호 협약은 발효 후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들로부터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2001년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08년에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동 협약의 가입을 권장하기로 하여 비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우루과이가 2013년 CoE 108호 협약에 가입하였다. 2014년 말 현대화 개정협약은 대부분의 회원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았으나 EU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CoE 108호 협약은 그 적용범위나 법적 성격이 인권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협약국에 공통된 법적 근거나 관행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E 108호 협약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훨씬 더 상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나 유출사고의 처리,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도 자세한 편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규정은 개정협약과 비교해 보면 개선할 점이 일부 발견된다. CoE 108호 협약은 국제조약이므로 가입 발효 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이전을 보장하면서도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규범정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oE 108호 협약에 먼저 가입 신청하거나 CoE 협상과 동시에 EU로부터 적절성 평가를 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개인정보, CoE 108호 협약,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유럽인권협약, 국제조약

〈 차 례 〉

- I. 머리말
- II. 유럽회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I. CoE 현대화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
- IV. CoE 108호 협약 가입의 검토
- V.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는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국경을 넘는 정보의 유통(trans-border data flow: TBDF)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거래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이 되었을 때 금융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한 개인정보가 외국의 콜센터나 데이터처리 센터에서 처리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제3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노우든 사건’(PRISM) 이후에는 정부기관에 의한 감청(surveillance)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sup>1)</sup>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투고일자 : 2015.11.10, 심사일자 : 2015.12.14, 게재확정일자 : 2015.12.17.)

1) 2013년 미국 정보기관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미국의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빼돌려 위키리크스(<<http://wikileaks.org>>)라는 웹사이트에 올렸다. 그 내용 중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각종 전자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직접 국내외의 통신과 이메일을 감청하는가 하면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PRISM 자료도 들어 있었다. 그 동안 이에 미국 기업들은 EU와의 셰이프하버 원칙에 따라 소정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정하면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EU와의 TBDF에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국제사회에서도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이나 법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OECD 회원국들이 지키기로 한 프라이버시 8원칙이 유명하거나, 특히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CoE)<sup>2)</sup>에서 만든 제108호 개인정보보호협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원칙을 유럽회의 회원국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전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맞게 현대화되었고, 이에 서명한 나라들이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나라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반한 국제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였고 EU 회원국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제교역도 매우 활발하다. 개인정보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새로 현대화 작업을 마친 유럽회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가 동 협약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기업들이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유럽회의 108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

European Union)는 2015년 10월 6일 EU 주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정보가 미국 내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간과한 셰이프하버 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CoE는 언론에서 일본의 예에 따라 ‘유럽평의회’로 번역해 쓰고 있는데 평의회란 군사평의회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라는 의미에서 ‘유럽회의’라 칭하기로 한다. 각주 8)의 저자도 같은 입장이다. 외교부에서는 ‘유럽평의회’라 부르고 있다(홈페이지의 조약정보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 한편 이름이 비슷한 European Council은 EU 회원국의 해당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EU 각료이사회를 말한다.

## II. 유럽회의와 우리나라의 관계

### 1. 유럽회의의 주요 활동

유럽회의는 인권을 비롯한 유럽의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sup>3)</sup>이다. 1949년 5월 서유럽 10개국이 ‘유럽회의 규약’(Statute of the European Council, 일명 Treaty of London)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회원국들의 공통된 유산인 이상과 원칙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의 확대된 통합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sup>4)</sup>으로 하는데, 군사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산하에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Committee of Ministers),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T-PD), 유럽의회(Parliamentary Assembly: PACE), 인권대표(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지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사무국(Secretariat)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과 의회, 인권재판소 모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유럽회의의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1950년에 체결된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과 2005년에 성립된 테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errorism)이 있다. 유럽회의는 그 창립이념에 맞게 유럽인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자유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협약을 제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심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약도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 가정생활 및 통신의 비밀 존중’<sup>5)</sup>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3) 엄밀히 말해서 유럽회의는 가맹국의 정부 및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inter-governmental and inter-parliamentary structure)이며 유럽공동체(EC),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이러한 선례를 따랐다. 설립 당시의 회원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10개국이었으며, 동유럽의 체제전환으로 회원국이 크게 늘어나 마지막 가입한 몬테네그로를 포함해서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옵서버로는 각료위원회(Council)에만 참석하는 5개국, 유럽의회(Assembly)에만 참석하는 3개국이 있다.

4) 유럽회의 규약 제1조 a항: The aim of the Council of Europe is to achieve a greater unity between its members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and realising the ideals and principles which are their common heritage and facilitating their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 2. 유럽회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럽회의는 설립규약 제4조에 의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에 참여 자격을 주고 있는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국내 인권 문제로 참여를 보류하였고 터키는 국토의 일부만 유럽에 있음에도 초기에 가입하였다. 유럽회의는 각료이사회와 의회의 각종 회의에 비유럽 국가들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을 허용 내지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협약에는 비유럽 국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sup>6)</sup>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에 대하여 2011년 각각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유럽회의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발효시켰다. 그 밖에 유럽회의의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이버범죄 협약<sup>7)</sup>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회의의 주요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산하 기관 중의 하나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통칭 “Venice Commission”)는 2006년부터 회원국이 되었다.<sup>8)</sup> 그 후로 연 4회 열리는 전체회의에 헌법재판관과 정부가 임명하는

### 5) Article 8 –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6) 유럽회의는 비회원국의 참가자격을 옵서버(observer), 신청국(applicant), 특별초청국(special guest), 민주주의의 동반자(partner for democracy) 등으로 나누고 있다. 비회원국으로서는 사이버범죄 협약에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반도핑 협약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튀니지 등이 가입해 있다.
- 7)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Budapest Convention)은 유럽회의의 회원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통한 사이버범죄 방지의 국제공조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내 법제를 정비해야 하는 데다 협약 가입의 실익을 놓고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 8) 베니스 위원회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안토니오 피콜라의 주창에 따라 민주주

대리위원이 교대로 한국 대표로서 참석하고 있다.

유럽회의는 그 밖에도 1999년 회원국들이 부패방지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부패 국가그룹(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GRECO)을 결성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많이 참고하였던 GRECO는 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제가 유럽회의의 기준에 미달한 것을 발견하면 상호평가를 통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실천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적발에 필요한 모범 기준(Best Practices)을 공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sup>9)</sup>

### III. CoE 현대화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

#### 1. CoE 108호 협약의 제·개정의 경위

유럽회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즉 국가로부터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존중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리하여 1978년부터 1979년까지 개인정보보

---

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회원국은 물론 동구권·중남미 국가 등에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하고, 헌법재판제도의 연구·발전·전파를 위해 1990년 유럽회의 각료이사회 결의로 탄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베니스 위원회의 옵서버 국가였으며 2006년 회원국이 된 이후 연 4회 열리는 전체회의에 정부대표와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매년 베니스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부환,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 현황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창간호(2010.2), 2~3면.

- 9) 유럽회의 산하 GRECO의 홈페이지<<http://ww.coe.int/greco>> 참조. [2015.11.30. 최종접속]
- 10) 宮下紘, “歐洲評議會條約第108號と現代化提案”, 個人情報保護における國際的枠組みの改正動向調査報告書, 消費者庁, 2014.3.28, 100面. 일본 추오대의 미야시타 히로시 교수는 일본 소비자청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14년 3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회의와 유럽인권재판소를 방문하고, CoE 108호 현대화 개정작업의 자문을 수행한 벨기에 니뮤르 대학에도 찾

호 전문가들이 모여 4차례의 회합을 갖고 OECD를 비롯한 옵서버 비회원국들과도 협의를 가진 끝에 1981년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협약」<sup>11)</sup>(이하 “CoE 108호 협약”)의 서명식을 가졌다.<sup>12)</sup> 그리고 5개국의 비준을 받아 1985년 10월 1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발효 후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sup>13)</sup>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널리 이용됨에 따라 회원국들로부터 ‘현대화’ 내지 ‘세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관한 자문용역(Consultation)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용역과제를 다수 수행하여 온 벨기에 나뮈르 대학이 맡아 하였으며, 동 보고서<sup>14)</sup>를 토대로 2011년 6월부터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 T-PD)가 CoE 108호 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제안(Modernization of Convention 108: Proposals)의 초안 심의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2012년 11월에는 자문위원회(T-PD)가 협약개정안 설명자료(Explanatory Report)를 공표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벌인 끝에 그해 11월 말 개최된 유럽회의 제29차 총회에서 현대화에 관한 최종문서를 채택하였다.<sup>15)</sup>

이미 2001년 11월에는 자문위원회에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감독기구 및 국경간 정보유통에 대한 추가의정서」<sup>16)</sup>를 채택한 바

---

아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 11) 영문 명칭은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CoE 10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지침 외의 유력한 국제조약으로서 그 비준국은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의 유럽경제지역 협정(European Economic Agreement: EEA) 체결국 및 스위스, 러시아, 그루지아 등 제3국이다. CoE 108호 조약을 EU지침에 근접하게 만든 2001년 보충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체결한 데 이어 2014년 12월 동 조약을 현대화하는 개정협약을 확정하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다. 새로 개정된 이 협약의 영어 원문과 번역문은 박현일,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집문당, 2015.10. 부록 260~303면 참조.
- 12) 2006년 4월 유럽회의 각료이사회는 동 협약의 서명식이 거행된 1월 28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로 정하고 국내외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사를 갖도록 하였다.
- 13) 2007년의 리스본 조약에 따라 CoE 108호 협약도 개정된 바 있다.
- 14) Cecile de Terwangne & Jean-Philippe Moïny, Report on the consultation on the modernisation of Convention 108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21 June 2011.
- 15) CoE 웹사이트<[https://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Cahdata\\_en.asp](https://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Cahdata_en.asp)> 참조.
- 16) 영문 명칭은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있었다. 또한 2008년 10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30차 개인정보감독기구 국제회의<sup>17)</sup>에서는 유럽회의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CoE 108호 협약의 가입을 권장하기로 하고, 동 협약을 통해 각국 개인정보감독기구의 협력을 촉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비유럽 국가로서 처음으로 동 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2013년 10월 비준을 한 우루과이였다. 한편 우루과이는 2012년 8월 EU로부터도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협약개정의 승인권을 갖는 유럽회의 각료이사회가 2013년 7월에 설치한 개인정보보호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Data Protection: CAHDATA)는 비회원국과 옵서버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과 협약개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CAHDATA는 2014년 3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sup>18)</sup> 같은 해 12월 요약 보고서(Abridged Report)를 채택하고 현대화를 위한 개정협약을 승인하였다.<sup>19)</sup> 개정협약은 대부분의 회원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았으나 회원국의 과반을 점하는 EU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sup>20)</sup>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garding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ransborder data flows. 추가의정서에서는 독립된 지위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을 규정하고, 비체약국으로 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보장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감독기구의 확인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 HTML/181.htm](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1.htm)> [2015.11.30. 최종접속]

17)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ICDPPC). 1978년에 설립된 개인정보감독 국제기구로 매년 회원국에서 돌아가며 일정한 주제 하에 연차총회를 열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59개국의 87개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33개의 주 정부 또는 부속령의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2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18) CAHDATA의 2014년 중 각종 회의문서와 자료는 유럽회의의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Cahdata\\_en.asp](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Cahdata_en.asp)> [2015.11.30. 최종접속]

19) Rule of Law section.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default\\_en.asp](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default_en.asp)>

20) CoE 108호 개정협약의 추진상황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중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의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가 2015년 7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회의 자문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유럽회의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CoE 108호 협약의 성격

### 1) 협약의 법적 성격

CoE 108호 협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럽인권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적용범위나 법적 성격은 인권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성격은 기존협약이나 개정협약이나 달라진 점이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체약국에 공통된 법적 근거나 관행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sup>21)</sup>

협약에 자동적인 집행력(self-executing)은 없고 협약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도출할 수도 없지만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당해 국가의 헌법이나 법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행동규범으로 장려할 때에는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22)</sup>

### 2) 사생활 보장의 의미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규정된 사생활·가정생활·통신의 존중이 프라이버시와 주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CoE 108호 협약 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인지에 대하여 통일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나,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문제가 된 사안과 전후의 사정, 배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sup>23)</sup>

21) 宮下紘, 前掲論文, 101面.

22) 上掲論文, 102面.

23) K.U. v. Finland 사건(No.2872/02 2 December 2008)은 1999년 당시 12세이던 K.U.가 본인도 모르게 ‘에인구함’이라는 웹사이트에 이름과 인적 사항이 올려져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자 그의 부모가 광고를 올린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통신비밀을 이유로 신문과악이 곤란해짐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핀란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CtHR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이란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생활의 보호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하므로 사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보장이란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복지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생활의 보호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것이 행정부나 입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 3. 현대화를 위한 주요 개정 내용

기존 협약<sup>24)</sup>은 전문(Preamble)과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협약도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협약은 개인정보의 자동처리(automatic processing)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대화 개정협약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전문과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다.

#### 1) 목적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전문]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것이 날로 증대됨을 고려하여 모든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 존중을 권리로써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프라이버시 존중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기본적 가치를 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p> <p>[제1조] 목적 모든 개인이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권리를 갖고 기본적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할 것을 각 당사국에 의무화함</p>	<p>[전문]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 그리고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유통의 다변화, 공고화, 세계화를 전제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의 처리를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에 입각한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과 “프라이버시의 존중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기본적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증진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유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하였음</p> <p>[제1조]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명시함</p>

ECtHR는 핀란드 정부가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고 3천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https://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Judgments/K.U.\\_v.\\_FINLAND\\_en.pdf](https://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Judgments/K.U._v._FINLAND_en.pdf)> [2015.11.30. 최종접속]

24) 기존 협약의 전문은 유럽회의의 공식 사이트 참조.

<<http://www.coe.int/en/web/conventions/>>

제1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이 국적 또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을 보호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기본권에 속함을 분명히 하였다.

모든 개인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존중, 특히 프라이버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호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권리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sup>25)</sup> 모든 이익과의 사이에 신중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 2) 개인정보의 개념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2조] 정의 a.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함</p> <p>[제2조] 정의 c. “자동처리”란 전부 또는 일부가 자동화된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관, 논리적·연산처리, 변경, 삭제, 복구, 배부 등의 작업을 말함</p>	<p>[제2조] 정의 1. 좌 동 [제2조] 정의 3. 자동처리를 정보처리로 바꾸고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보관, 수정, 검색, 공개, 이용, 삭제 또는 파기, 또는 정보의 논리적·연산처리를 수행하는 어떤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상세히 기술함</p>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식별되었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기존 협약을 답습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기술 또는 구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감시 카메라, 필름을 포함한 영상, 화상, 음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sup>26)</sup>

25) ECtHR 판례에 의하면, 모나코 공주가 휴가 중에 스키를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Von Hannover v. Germany (No.2), ECtHR, Nos.40660/08 and 60641/08, 7 February 2012;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유명인사가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Axel Springer AG v. Germany, ECtHR, No.39954/08, 7 February 2012.

26)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가정’에는 상업용 건물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건물 내에 있는 전자적 데이터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만 세무당국의 조사를 위해 행하는 것이라

식별가능성은 비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sup>27)</sup> 추가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그 정보의 장래 이용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sup>28)</sup>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익명화(anonymisation)-가명화(pseudonymisation)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각료이사회의 권고, 설명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sup>29)</sup>

제5조는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그 목적이 적법하고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개인정보처리는 자유롭고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명확하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인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였다.<sup>30)</sup>

---

면 합법적이다. *Bernh Larsenholding AS and Others v. Norway*, ECtHR No.24117/08, 14 March 2013; 도로에서의 폭과공격에 관여한 피의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GPS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의견 또는 감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존중의 권리에 대한 간섭이 된다. 그러나 간섭의 정도가 치안확보를 위한 감시에 비해 크지 않고(비례의 원칙) 감시의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진다면 사생활의 침해라 할 것은 아니다. *Uzun v. Germany*, ECtHR No.35623/05, 2 September 2010.

27) 유럽회의에서 1990년에 공표한 「지급정보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No. R Rec (90) 19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used for payment and other related operations, 13 September 1990)에 의하면 식별하는 데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비용, 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28) Council of Europe,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4, pp.36, 40.  
 <[http://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ENG.pdf](http://www.echr.coe.int/Documents/Handbook_data_protection_ENG.pdf)> 현행 EU지침도 전문 제26항에서 “어느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정보관리자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dentifiable,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고 규정하고 있다.

29) 물리적·생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 또는 그의 결합에 의해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주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해 정보는 익명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익명성은 기술진보에 따라 적의 재평가해야 한다. 가명화란 암호해독용 키를 사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화와는 다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관한 CoE 권고(2012.4.4)에 의하면, 가명화는 온라인상에서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가명화의 권리는 자유로운 언론과 정보·사상을 수수하는 권리라는 관점,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宮下紘, 前掲論文, 112~113面.

30) EU집행위원회는 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의 일치를 위해 개정협약 제5조, 제6조

### 3) 민감한 정보의 처리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6조] 정보의 특별 유형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다른 신념, 건강 또는 성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는 국내법상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유죄판결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p>	<p>[제6조] 민감한 정보의 처리 (1) 유전자정보, 범죄·형사소송·유죄판결에 관한 개인정보 및 관련 보안조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인종·정치적 견해·노동조합원·종교 등의 사상·건강 또는 성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는 이 협약을 보완하여 특별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가 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안전조치는 민감한 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차별당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p>

민감한 정보란 유전자 정보, 범죄, 형사소송, 유죄판결 기타 보안조치, 생체정보,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원, 종교, 사상, 건강, 성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추가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safeguards)를 취하는 경우에 한해 그의 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정보가 문제가 된다. 의료정보는 공중위생에 대한 위협의 방지, 특정범죄의 억제 기타 중요한 공공이익을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항상 익명화하도록 한다. 익명화가 곤란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연구목적에 대한 동의, 대리인 등에 의한 동의, 국내법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공중위생에 필요한 연구인 경우에 한해 연구조사에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의료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에서와 동등한 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sup>31)</sup>

에 대하여 유보의견을 내놓았다.

31) CoE, Recommendation No.R(97) 5 on the protection of medical data, 13 February 1997.

#### 4) 정보주체의 권리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8조]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p> <p>a. 누구든지 자동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존재와 그 목적,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음</p> <p>b. 합리적인 간격으로 과도한 지체나 지출 없이 자기의 정보가 자동화된 정보파일로 보관되어 있는지 통지를 받을 수 있음</p>	<p>[제8조] 정보의 열람</p> <p>2.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통지,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보유기간 및 정보처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음</p> <p>3. 정보처리의 결과가 그에게 적용될 경우 정보처리의 사유를 요구할 수 있음</p>
<p>[제8조] (정보의 정정)</p> <p>c. 누구든지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내법에 반하는 정보처리가 행하여진 경우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p>	<p>[제8조] 정보의 정정</p> <p>5.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무료로 과도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p>
<p>정보주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음</p>	<p>[제8조] 정보주체의 이의신청</p> <p>4. 정보관리자가 정보처리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자유를 제약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음</p>
<p>[제8조] (구제 받을 권리)</p> <p>d. 통지의 신청, 정정·삭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음</p>	<p>[제8조] 구제 받을 권리</p> <p>7. 정보주체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감독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p>

개정협약 제8조에서는 정보주체가 자동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존재,<sup>32)</sup> 정보관리자의 신원에 접근열람(access)<sup>33)</sup>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언제든지 정보관리자(controller)가 정보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제시<sup>34)</sup>하지 못하면 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반대할 수 있다<sup>35)</sup>는 것과 개인정보가 본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

32) ECtHR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기록을 지자체가 비밀취급을 하고 있다면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가정생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 제8조에 반한다고 보았다. *Gaskin v. the United Kingdom*, ECtHR No.10454/83, 7 July 1989.

33) 정보열람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준적인 디지털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적용되어야 한다. 宮下紘, 前掲論文, 115面.

34) 환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포함한 사적으로 민감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간섭하는 것이지만 근로재해 인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국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근거의 제시가 있었고 그 방법도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M.S. v. Sweden*, ECtHR, No.20837/92, 27 August 1997.

리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sup>36)</sup>를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data breach notification)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현대화 개정에서 주목을 요하는 변동사항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관리자는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사고의 발생과 대응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및 대응창구 안내 등의 통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5) 정보관리자·정보처리자의 의무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2조] 정의</p> <p>d. 파일관리자란 국내법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 정보 파일의 목적,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그에 적용할 작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공적기관 등을 말함</p>	<p>[제2조] 정의</p> <p>4. “정보관리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보처리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의 단체를 말함</p> <p>6.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별개의 주체를 말함</p>
<p>[제5조] 정보의 질</p> <p>a.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여야 함</p>	<p>[제5조] 정보의 처리</p> <p>(1) 정보처리는 적법한 목적에 비례하고, 정보처리 단계에서 이해관계 및 문제가 된 권리·자유와 공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p> <p>(2) 정보처리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근거에 입각하여 해야 함</p>

35) 대량의 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은 신용정보, 근무성적 등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정확한 결과와 차별, 편견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프로파일링에 관한 CoE 권고(2010.11.23)에서는 프로파일링의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열람권, 정정권과 함께 이의신청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宮下紘, 前掲論文, 116면.

3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특정, 처리조건과 적법성, 정정·삭제의 권리와 함께 이의신청, 동의의 철회 등이 권리로 인정됨으로써 정보주체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권리의 집합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Google v. Spain AEPD, 13 May 2014 판결에서 인정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上掲論文, 117면.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5조] (정보처리의 적법성)</p> <p>b.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되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p> <p>c.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관목적에 비추어 충분하고 적절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함</p> <p>e.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관목적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행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p>	<p>[제5조] 정보처리의 적법성</p> <p>(4) 2. 개인정보는 명백하고 특정·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여야 함</p>
<p>[제5조] 정보의 질</p> <p>d.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p>	<p>[제5조] 정보의 질</p> <p>(4) d.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 상태의 것일 것</p>
<p>[제7조] 정보 보안</p> <p>우발적이거나 권한없는 파괴, 우발적 분실 및 권한없는 열람·변경·배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함</p>	<p>[제7조] 정보 보안</p> <p>(1) 당사국은 정보관리자, 필요한 경우의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함</p> <p>(2)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 사실은 지체 없이 관할 감독기구에 신고하도록 함</p>
<p>명문의 규정 없음</p>	<p>[제7조의2] 정보처리의 투명성</p> <p>(1)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하여 정보처리자의 신원, 주소/설립지,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와 목적, 개인정보의 종류, 정보의 수령자, 권리행사 방법 기타 공정하고 적법한 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함</p>
<p>없음</p>	<p>[제8조의2] 추가적인 의무</p> <p>(1)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2)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는 예정된 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리스크 분석 및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3)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적·조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p> <p>(4) 정보관리자/처리자의 규모,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성격, 리스크에 비추어 의무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p>

제8조의2에서는 정보관리자 또는 해당이 있는 경우의 정보처리자에 대한 추가적 의무로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독기관에 대하여는 그의 관할에 속하는 정보처리가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정한 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나 기본적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러한 권리나 기본적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 작업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 6) 협약 적용의 예외

제9조에서는 CoE 108호 협약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다음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sup>37)</sup> ② 법률에 의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중대한 경제적 재정적 이익,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범죄의 방지·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sup>38)</sup>이거나, ④ 정보주체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같은 민주사회에 필요하고 적합한 조치인 경우<sup>39)</sup>에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safeguards)는 기술적·관리적으로 개인정보의 성격과 사이즈, 기술적 취약성, 정보접근의 제한, 장기보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sup>40)</sup> 현재의 보안기술상 최고의 수준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코

- 
- 37) 정보주체의 동의는 대상을 특정하여 고지를 받고 자유롭게 명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침묵이나 부작위는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8) ECtHR의 판례에 의하면, 공산주의 체제 하의 루마니아 첩보기관이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는 것은 설령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해도 그러한 첩보활동에 대한 규제나 정보보관의 시간적인 제약, 비밀감시에 따른 구제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법성의 요구를 따르지 못한 것이다. *Rotaru v. Romania*, No.28341/95, 4 May 2000.; 공도 상에서 CCTV 카메라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포착하였을지라도 얼굴을 마스크 처리하지 않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CCTV 촬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견할 수 없었던 공표방법으로 사생활에 간섭하고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 것이다. *Peck v. the United Kingdom*, No.44647/98, 28 January 2003.
- 39) 예컨대 자연재해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 또는 정보주체의 불가결한 이익을 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40)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자기가 HIV에 감염된 기록이 병원 내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신소한 사건에서 동 병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로그 기록을 유지하는 등 핀란드 국내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의료파일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불법한 열람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행해지지 않았고 사생활존중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I v. Finland*, ECtHR, No.20511/03, 17 July 2008.

스트나 잠재적인 리스크의 심각성과 확률에 걸맞은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처리의 투명성(제7조의2) 및 정보주체의 권리(제8조)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통계적·과학적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 7) 국제적인 정보유통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p>[제12조] 개인정보의 국제이전과 국내법 다른 회원국으로의 개인정보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특별한 허가조건을 붙이지 않으나, 동등한 보호수준 없이 개인정보의 유형이 특별한 규제를 요하는 경우, 비회원국으로의 정보 이전은 금지됨</p> <p>[추가과정서 제2조] 정보이전의 예외조치 (1) 이전 상대국이나 조직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체약국이나 조직에 속하는 수령자에 대한 정보이전을 허용할 수 있음</p>	<p>[제12조] 정보이전의 원칙 (1, 2)이 협약의 다른 회원국으로의 정보이전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됨. 제3국에 대해서는 지역 내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보호규칙에 의한 규율,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때야 가능함 (3) 적정 수준의 보호는 ①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법규범 ② 정보의 이전 및 처리에 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시행 가능한 문서로써 제공되는 표준화된 안전조치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함</p>
<p>[추가과정서 제2조] 정보이전의 예외조치 (2) 정보주체에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중요한 공공이익 등 적법한 지배적 이익이 있음을 국내법에 규정한 경우, 또는 정보이전의 책임이 있는 정보관리자가 계약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권한 있는 감독기관이 그러한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수 있음</p>	<p>[제12조] 정보이전의 예외조치 1. 정보주체가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명백히 특정하여 자유로운 의사로써 동의한 경우 2. 정보주체가 특정한 사안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3. 우세한 적법한 이익, 특히 공공의 이익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의 이전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p>

유럽회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의 영향을 받아 2001년의 추가과정서에 비회원국에 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적절한 수준(appropriate level)<sup>41)</sup>의 개인정보보호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개정협약은 이를 반영하여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에 관하여 제12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41) EU지침에서 ‘적절한 수준(adequate level)’이라 한 것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이라고 표현을 달리 했다.

가지 목적으로 하여 본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관할에 속하는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허가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제기구에 속하는 국가와 공유하는 보호규칙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만일 정보수령자가 당사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제2항). 여기서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는 법률이나 국제조약, 또는 정보의 이전·처리에 관여하는 자가 채택시행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하는 표준화된 안전조치<sup>42)</sup>를 취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제3항).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된 중대한 공익 등 적법한 이익<sup>43)</sup>이 있고 정보의 이전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제4항).

## 8) 감독기구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추가외정서 제1조] 1. 협약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는 국내법의 조치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함	[제12조의2] 감독기구 (4) 감독기구는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함

- 42)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s), 미국-EU간에 체결된 Safe Harbor Principle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CoE 108호 협약에는 EU지침과 같은 적절성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현대화 개정안의 채택 직전에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정보의 유형, 이전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기간, 개인정보를 내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이전에 관련된 국가와 조직에 적용되는 일반·개별법의 규정, 정보보안규칙 등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기로 했다. 박현일, 전게서, 153면; 宮下紘, 前掲論文, 126~127면. 한편 유럽회의의 자문위원회는 추가외정서 채택 후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대신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14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CoE, Consultative Committee, *Guide to the preparation of contractual clauses governing data protection during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not bound by an adequate level of data protection* (2002).
- 43) 개인정보의 이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거인 우세한 적법한 이익(prevaling legitimate interests)이란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 CoE 108호 협약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익을 가리킨다.

기존 협약	현대화 개정협약
3. 감독기구는 완전히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5의2) 감독기구는 그의 활동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추가개정서 제1조] 2. 감독기구는 조사 및 개입권, 사법절차에 참가하거나 사법부에 위반사실을 제소하는 권한을 가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권리기본적 자유에 관한 신소를 접수해야 함	[제12조의2] 감독기구의 권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안전조치의 승인, 협약 위반의 결정을 내리고 제재를 과하는 권한, 홍보계발에 관한 책임
[추가개정서 제1조] 5. 감독기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함	[제12조의2] 감독기구의 협력 감독기구는 서로 정보교환, 조사 등에서의 협력, 정보보호 법령정보의 제공 등

개정협약 제12조의2에서는 감독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001년의 추가개정서 제1조의 규정을 이어받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커미셔너, 음부즈만 등으로 불리는 감독기구는 완전히 독립하여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sup>44)</sup> 조사, 개입, 공동행위의 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정협약은 발효 후에 협약 위원회(Convention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19조에서 협약 위원회는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신청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하여 각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추천하도록 한다.

가입한 후에는 협약을 제대로 시행(follow-up)하는지 조사하고 불이행 시에는 조치를 추천하여야 하며,<sup>45)</sup> 필요한 경우 협약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의 우호적인 해결(friendly settlement)을 촉진하여야 한다.

44) 점포의 현금도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비디오 녹화를 한 사건에서 ECtHR은 종업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활동에도 적용되는 사생활의 존중에 저촉되지만 재산권 및 공공이익의 보호도 중요하므로 둘 사이의 공정한 비교형량이 있다고 보았다. Köpke v. Germany, ECtHR, No.420/07, 5 October 2010.

45) 조사의 방법은 설문지 평가와 현지방문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의 완비, 독립된 감독기구의 존재, 비당사국으로의 정보이전에 대한 합리적 규율 등을 점검하는 것이 될 것이다. Stewart Dresner, "Council of Europe reinforces DP Convention 108 protections",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3, February 2015, p.8.

## IV. CoE 108호 협약 가입의 검토

### 1. 사전검토를 요하는 사항

유럽회의는 CoE 108호 협약 30주년을 맞아 협약의 현대화 개정작업을 추진할 때 글로벌한 프라이버시 기준(Global Privacy Standard)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비회원국에도 CoE 108호 협약에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 첫 번째로 우루과이의 가입을 승인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입법이 시작된지 40년이 경과하면서 2015년 1월 현재 109개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갖추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EU의 기준에 맞춰 입법(bottom-up)을 하였는데 최근 현대화 개정작업을 마친 CoE 108호 협약도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좋은 모델(top-down)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6)</sup>

CoE 108호 협약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 협약위반 시의 제재나 구제수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골디락스(Goldilocks)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프”와 같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sup>47)</sup> 사실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국제적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없고 기준을 낮추면 개인정보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회의의 법률문서가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이나 국내의 수요가 인정될 경우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CoE 108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기존 법제가 이를 수용할 여건이 되어 있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다른 점이나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의 이전을 포함한 국제교역의 상대방은 유럽회의의 모든 회원국인

46) Graham Greenleaf, “The UN Special Rapporteur: Advancing a global privacy treat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6, August 2015. pp. 7-8.

47) Graham Greenleaf, ‘Modernising’ Data Protection Convention 108: A Safe Basis for a Global Privacy Treaty?,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29 No.4, pp. 430, 436 (2013); Graham Greenleaf, The Influence of European Data Privacy Standards outside Europe: Implications for Globalization of Convention 108,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 2 No.2, pp. 68, 84 (2012).

- 아니라 일부 EU 회원국이 아닌가?
- o EU 회원국과의 개인정보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절성 평가(Adequacy assessment to become Whitelisted countries)를 받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 o 이미 서명이 끝난 CoE 108호 개정협약은 협상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가 비준을 하면 곧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 않는가?
  - o CoE 108호 협약에 가입한다면 EU의 적절성 평가를 받는 데 무엇이 유리한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
  - o 우리나라가 CoE 108호 협약 가입으로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

## 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의 비교

유럽회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법제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주가 되고 그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의료법」 등을 부분적으로 참고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CoE 108호 협약과 무엇이 다르고 가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국제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평가

주요 항목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li> <li>•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li> </ul>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가안보·질서유지 같은 예외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li> <li>• CoE 기준협약의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상세히 규율</li> <li>•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정도 있음</li> </ul>
개인정보보호 예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외: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수집, 국가안보관련 정보수집, 공중위생 등 공공안전을 위한 일시적 처리, 언론·종교단체·정당의 취재·보도,</li> </ul>

주요 항목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선교, 선거공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통계작성·학술연구를 위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분야별로 신용정보법, 의료법에서 도 명시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그 처리를 제한하는 등 특별 취급
정보주체의 권리	• OECD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목적의 명시와 정보주체 의 자유로운 동의 등을 대체로 준수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구제수단 외에도 이용에 편리한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음
의무 규정	• 정보관리자와 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통합하여 규정 • 대형 인터넷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제 강화 •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의 무화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정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단체소송 등 강력한 구제수단이 제도화되어 있음
개인정보의 국제이전	•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는 국제이전을 위한 안전조치 없음 • 위반 시의 제재, 구제수단이 없음
감독기구	• 대통령실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 검찰, 경찰 여러 기관에 분산
기 타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3년 단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수립 및 그 시행의 구체화,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위의 분석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ADR)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독창적인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프라이버시 방침을 공지하게 한 것, 개인정보 미제출 시 서비스 거부를 못하게 한 것, 개인정보 침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침해 신고의 의무화, 정보주체의 요구 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 등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sup>48)</sup>

CoE 108호 협약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훨씬 더 상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나 유출사고의 처리,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도 자세한 편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규정은 개정협약 제12조와 비교

48) Graham Greenleaf and Whon-il Park,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comparison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0, 2014, p.504.

해 보면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 구분<sup>49)</sup>이나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등 개선할 점이 많이 발견된다.<sup>50)</sup>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 국외이전 목적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 있는 정보로서 국외이전으로 인해 침해의 위험이 증대되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1)</sup>

그렇다면 EU로부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수준이 EU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CoE 108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좋을까?<sup>52)</sup> 그 득실을 따져가며 SWOT 분석을 하여보자.

우선 EU와는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EU로부터 개인정보 국제이전의 제한이 없는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된다면 EU 회원국에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은 현지 임직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에 이전하는 데 따른 거래비용<sup>53)</sup>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그 결과 EU 회원국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의 교역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sup>54)</sup>

49) 정통방법 제6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3자 제공’과 ‘위탁’으로 나누고 있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박환일, 전제서, 222~225면.

50) 구태언,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1호, 2013.3, 297~303면.

51) EU의 2012 GDPR(안)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요건 중에서 개인정보성만 남기고, 식별가능성은 정보주체의 정의로 넘겼다. 즉, 어느 개인과 관련 있는 정보로서 그 정보로부터 식별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52) UNSW 그린리프 교수는 CoE 108호 협약이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Graham Greenleaf, *Asian Data Privacy Laws —Trade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December 2014, p. 38.

53)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상당한 법률비용을 들여 현지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인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든가 BCRs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자체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4) 일본 관방장관은 2015년 초 의회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201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을 위한 각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및 개인정보작업반 사이의 협상(trilogue negotiations)<sup>55)</sup>이 중동 난민 사태, IS 파리 테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시한내 타결되었으나, GDPR의 발효는 빨라야 2년 후이므로 EU의 적절성 평가 작업은 그때까지 현행 지침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여기서 CoE 108호 협약은 국제조약이므로 일반적인 조약 체결과 비준,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 발효 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비교적 철저</li> <li>-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구제수단</li> <li>- 소액 손해배상 중심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의 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빈발</li> <li>-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사건의 속출</li> <li>- 개인정보 감독기능의 분산</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등 국제협상 시 한국 법제에 대한 해외 관심도의 증가는 국제적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국제이전에 관한 규정의 미비</li> <li>- 개인정보의 국경간 집행(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에 대한 관심 희박</li> </ul>

## V. 맺음말

오래 전부터 인터넷 보급률이나 전자정부의 서비스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법제의 국제적 집행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경의 개념이 희박한 데다 국내 기업의 해외

---

EU 적절성 평가를 받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Hiroshi Miyashita, “Japan amends its DP Act in light of Big Data and data transfers”,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7, October 2015, p. 8.

55) 당초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GDPR제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자 EU는 2015 연내 타결을 목표로 회원국 정부 대표를 참여시키는 삼각협상 일정을 마련하였다.

진출, 외국의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SNS,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으로 개인정보의 국제적인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협력체제 구축에서도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이전을 보장하면서도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규범정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sup>56)</sup>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피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취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oE 108호 협약에 먼저 가입 신청하거나, 그와 동시에 EU의 적절성 평가를 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려<sup>57)</sup>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나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표준약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APEC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sup>58)</sup>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룰(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56) 박원일, 전제서, 217면.

57) 비유를 하자면 우주선이 먼 행성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으려고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 일 부러 가까운 행성에 접근(swing-by)하는 것과 같다. 영화 ‘인터스텔라’, ‘마션’에서도 유인 우주선의 비행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 1974년 수성 탐사선 마리너 10호는 금성을 근접 비행하여 수성으로 가는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Gravity\\_assist](https://en.wikipedia.org/wiki/Gravity_assist)>

58) OECD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의 개인정보감 독기구에 이에 관한 권고를 하였다. OECD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of 12 June 2007.

## 참고문헌

-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5.
- 구태언,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가천법학 제6권 제1호, 2013. 3.
- 박현일,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집문당, 2015.
- 한부환,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 현황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창간호, 2010.2.
- 宮下紘, “歐洲評議會條約第108號と現代化提案”, 個人情報保護における国際的枠組みの改正動向調査 報告書, 消費者庁, 2014.3.28.
- Council of Europe, *Handbook 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2014.
- Dresner, Stewart, “Council of Europe reinforces DP Convention 108 protections”,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3*, 2015.
- Greenleaf, Graham, *Asian Data Privacy Laws—Trade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December 2014.
- \_\_\_\_\_, “The UN Special Rapporteur: Advancing a global privacy treat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6*, 2015.
- \_\_\_\_\_, “Global data privacy laws 2015: 109 countries, with European laws now in a minority”,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3*, 2015.
- \_\_\_\_\_, “Risks and benefits of CoE Convention 108 modernisation”,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23*, 2013.
- \_\_\_\_\_, “‘Modernising’ Data Protection Convention 108: A Safe Basis for a Global Privacy Treaty?”,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Vol. 29 No.4, 2013.
- \_\_\_\_\_, “The Influence of European Data Privacy Standards outside Europe: Implications for Globalization of Convention 108”,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 2 No.2, 2012.
- \_\_\_\_\_, and Whon-il Park, “South Korea’s innovations in data privacy principles: Asian comparison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0, 2014.
- Miyashita, Hiroshi, “Japan amends its DP Act in light of Big Data and data transfers”, *Privacy Laws & Business International Report Issue 137*, 2015.
-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2015. 11. 30. 최종접속]

대한민국 외교부 조약정보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multilateral/index.jsp>>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ttps://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Judgments/>>

GRECO <<http://www.coe.int/greco>>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 Abstract

#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Data Protection and Desirable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Park, Whon-II\*

The Council of Europe (CoE), founded in 1949, has been very activ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nd established the Data Protection Convention 108 (effective in October 1985) based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 The CoE Convention 108 and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Union, which the majority of CoE member states belong to, have been a model of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ound the glob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hange of circumstances since its creation called for the modernisation and globalisation of the CoE Convention 108 and the 2001 Additional Protocol as well. As a result in 2013, Uruguay was the first non-European state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t the end of 2014, the modernized Convention 108 was endorsed by most of member states, but waited for the finalization of the EU draft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s the CoE Convention 108 ensured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been committed to enforce the provision in real cases. The Court has rendered its rulings in consideration of common rules and practices among member states, and other special aspects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t issue.

In Korea, the data protection laws are regarded as powerful and innovative in protecting data subjects and implementing safeguards except provisions on data export to a third country. Compared with the CoE Convention 108, the Korea's privacy law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provisions in detail to prevent the abuse and misuse of personal data, and to provide

---

\* Professor of Law,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countermeasures to data breach incidents and remedial compensation to data breach victims. In the area of data transfer, however, some provisions are criticized in need of improvements. So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rits and risks in the proposed accession to the CoE Convention 108, which is in nature a treaty to be effective as a domestic law.

In the Information Age being equipped with high speed broadband networks, Korea should facilitate the transborder data flow, ensure the citizens' interests and rights related with privacy, and take a leadership in establishing harmonized legal instruments on data protection as well as their enforcement on a global scale. To this end, it seems to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ccede to the CoE Convention 108 first, or to apply concurrently for the EU adequacy assessment of Korea's data protection regime.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CoE 108 Convention,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European Convention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treaty